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이용시간, 이용자, 이용제한, 변상 및 원상회복 등

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이하 “가족행복플라자”라 한다)의 위치는 구미시 산책길 73(원평동)로 한다.

제3조(사업) 가족행복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족관계개선 사업
3.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지원 사업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사업
6. 그 밖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파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가족행복플라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가족행복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가족행복플라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다만, 월요일 18시부터 21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중 야간돌봄만 운영한다.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이용자) 가족행복플라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미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행복플라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2. 음주 상태인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7조(변상 및 원상회복) 시설이용자가 가족행복플라자의 시설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가족행복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행복플라자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족행복플라자의 시설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가족행복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가족행복플라자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정

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유재산인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시설의 청소용역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설의 청소용역으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아동보육과 가족지원계장 정명자 (☎480-6551)

아동보육과 복지7급 김희정 (☎480-6553)

소관 실·과		아동보육과
입 안 자	과 장	황 은 채
	담 당	정 명 자
	담 당 자	김 희 정 (480-6553)